

# 통일 대비 북한의 원유·가스 탐사개발 계약에 관한 법정정책적 고찰

오 일 석\* · 윤 수 진\*\*

- I. 서론
- II. 북한에서의 원유·가스 탐사개발권 계약
- III. 북한 정부의 위협과 계약법적 고려사항
- IV. 통일 대비 북한 원유·가스 탐사개발계약에 관한 분석
- V. 결론

## 국문요약

북한에는 엄청난 양의 원유·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른바 '자원전쟁'의 시대에 원유 비생산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같은 북한의 자원은 최대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북한의 원유·가스 탐사개발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은 북한 자원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 됨은 물론이고, 통일 이후 '통일 한국'의 경제력 측면에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북한의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북한정부와 계약을 통해 원유·가스 탐사개발권을 취득하는 방법과 이를 인수하는 방법(승계취득)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막대한 자본이나 고도의 기술, 축적된 경험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합작투자나 컨소시엄에 지분권자로서 투자하는 참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 자원개발의 경우에도 탐사개발권을 승계 취득하는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 자원개발은 북한 당국의 정세 불안정과 신뢰성 있는 정책추진의 결여 등의 문제 때문에 진척이 더딘 어려움을 겪어왔다. 앞으로 북한에서 탐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제석유회사와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위험성에 각별히 유념하면서 대비하여야만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그 안전장치로서 안정화 조항, 재협상 및 변경 조항, 준거법 조항, 중재 및 주권면제포기 조항을 설계하여 계약에 반영시키는 방안을 검토 및 제시하였다.

한편, 남북한은 특수관계에 놓여있어 앞으로 '통일'이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경우

거래가 아닌 국가승계라는 측면에서 기존 계약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통일'이라는 중대한 여건변화가 발생한 경우, 기존에 북한 당국이 국제석유회사들과 체결한 탐사개발계약의 처리 문제에 대하여 논의를 집중하여 전개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논거나 확실 구성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결론적으로는 북한 당국이 통일 이전에 체결한 탐사개발계약도 '통일한국'이 승계한다는 데에 견해들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통일한국'은 계약상 안정화 조항이나 재협상 조항을 활용하여 이미 성립·진행되고 있던 탐사개발계약을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일한국의 국영석유회사는 비운영자로서 공동운영계약 규정을 통하여 기존 원유·가스 탐사개발 사업의 운영자를 통제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때 탐사개발권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한편, 북한과 중국 혹은 러시아와의 영토분쟁지역 또는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한 문제가 있는 해상 혹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인접한 해상 등에서의 원유·가스 탐사개발은 소유권 분쟁 등으로 인하여 지체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공동개발협정이나 광구통합계약을 통하여 탐사개발의 계속적이고도 신속한 진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국가승계, 안정화 조항, 재협상 조항, 공동 운영계약, 공동개발협정, 광구통합계약

\* 법학박사, 고려대학교 강사,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전문경력관

\*\* 변호사,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전문경력관

## I. 서론

최근 중국, 미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강국들은 동북아를 넘어 유라시아 차원에서 경제협력과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국가적 정책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2011년 ‘뉴 실크로드 이니셔티브’를 제시하여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를 관통하는 국제운송회랑 구축을 시도하였고, 러시아는 2012년 ‘신동방정책’을 제시하여 동시베리아와 연해주 등 극동지역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제시하여 유라시아 지역에 대한 인프라건설과 무역 촉진 등을 통해 육상 실크로드 경제지대와 해상 실크로드를 구축하려고 구상하는 등 유라시아 지역을 단일 경제권으로 통합하려는 시도가 경쟁적으로 전개되고 있다.<sup>1</sup> 우리나라도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관통하는 물류, 교통, 에너지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구축하여 장기적으로 전 세계 인구의 71%를 묶는 거대한 단일시장을 구축하자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의 새로운 아시아 정책에 맞추어 우리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국, 러시아 등과 양자관계 발전을 통해 신뢰를 축적하고 미국과는 전략적 소통을 유지 강화함은 물론,<sup>2</sup> 북한의 에너지 개발과 관련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제적 협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북한에는 엄청난 양의 원유·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한반도 형성과정에서 전개된 퇴적분지인 북한의 서한만은 지질구조상 원유가 존재할 개연성이 높다. 실제로 중국 국영해양석유총공사(2005년 10월 자체 분석에 따라 서한만에 약 600억 배럴 규모의 원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북한과 원유·가스 탐사개발 계약을 체결하였던 영국의 Aminex와 석유개발 전문가들도 북한에 상당량의 원유·가스가 매장되어 있다고 확인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상당량의 원유·가스가 매장되어 있다고 추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개발 비용과 기술력을 확보하기 곤란하여 북한에서의 원유·가스에 대한 탐사개발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또한 정유시설과 운송시설 등 관련 인프라가 노후화되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의존도에서 탈피하고, 낙후된 경제상황

<sup>1</sup> 신중호,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한반도에 대한 함의”, Online Series(Co 15-20), 통일연구원 (2015. 8. 12), p. 1.

<sup>2</sup> 신중호, 위의 글, p. 7, 참조.

을 타개하고 경제발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제석유회사 등과 원유·가스 탐사개발 계약을 체결하여 원유·가스 탐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의 원유·가스 탐사개발권을 취득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심화된 자원개발 경쟁의 추세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달성을 위하여 상당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현재까지 전개된 북한의 원유·가스 탐사개발의 상황과 원유·가스 탐사개발의 특성을 살펴보고, 탐사개발권이 취득과 관련한 계약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북한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탐사개발권을 취득함에 있어, 북한 당국의 불안정성이나 돌발행동 등으로 인하여 탐사개발권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한 안정화 조항, 재협상 및 변경 조항, 준거법 조항, 중재 및 주권면제포기 조항 등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통일을 고려할 때, 북한 당국이 기존에 국제석유회사와 체결한 원유·가스 탐사개발권 계약은 국가승계로 인해 통일 한국에 승계된다는 전제하에, 통일 한국에 유리하게 위 탐사개발권 계약이 승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정화 조항과 재협상 조항의 활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통일 후 국가승계에 따라 기존에 실행되고 있는 탐사개발 프로젝트에 비운영자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운영계약을 통해 기존 운영자를 통제하는 방법에 대하여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 광구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의 영역에 걸쳐 존재하는 경우에는 공동개발협정과 광구통합계약이 이용될 수 있는바 이를 검토하고자 한다.

## II. 북한에서의 원유·가스 탐사개발권 계약

### 1. 원유·가스 탐사개발 계약에 대한 이해

#### 가. 개요

원유·가스 탐사개발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 첨단 기술 및 숙련된 인력과 축적된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원보유국 정부가 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곤란하다. 자원 보유국 정부는 자본 조달을 용이하게 수행하며, 전문 기술력과 인력을 보유한 국제석유회사 등으로 하여금 원유·가스 탐사개발을 수행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원을 개발하고 그 이득을 기반으로 낙후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자 한다.

한편 국제석유회사라 하더라도 원유·가스 탐사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자본과, 집적된 기술, 전문 인력과 고부가가치의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한 국제석유회사가 단독으로 자원보유국 정부와 원유·가스 탐사개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국제회사들이 합작투자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자원보유국 정부와 탐사개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자원보유국 정부와 국제석유회사 등은 원유·가스 탐사개발 사업의 성공으로 인한 이익을 추구하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석유회사 등과 자원보유국 정부는 탐사개발권의 원시취득에 관한 계약을 정립해 왔다.<sup>3</sup> 자원보유국과 국제석유회사들과의 원유·가스 탐사개발권의 원시취득에 대한 계약은 크게 양허, 생산물분배계약, 도급계약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sup>4</sup> 한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석유회사 등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이러한 탐사개발계약을 원시적으로 취득하는데, 이 컨소시엄에 자본을 투자하거나 전문기술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참여한 각 회사들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탐사개발권의 지분을 인수하여 탐사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승계적 취득이라 한다.

## 나. 탐사개발권의 원시적 취득

### (1) 양허

원유·가스 탐사개발권의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 양허이다. 원유·가스 탐사개발에 대한 고전적인 양허의 개념은 한 국가가 국제석유회사에 대하여 계약으로 정한 일정 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특정 지역에 있는 유전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가한 계약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sup>5</sup> 고전적인 양허계약은 국제석유회사에 대하여 석유 탐사개발 운영과 관련된 모든 배타적 권리를 수여함과 아울러 석유 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수여하였다.<sup>6</sup> 이 경우 탐사개발권자는 자원 보유국 정부에 대하여 로열

<sup>3</sup> Nutavoot Pongsiri, "Partnerships in oil and gas production-sharing contract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Sector Management* (2004), pp. 431, 432 <available at <http://www.emeraldinsight.com/journals.htm?articleid=868037&show=html>> (검색일: 2015.11.19)

<sup>4</sup> 이들 계약의 성격이나 역사적 배경은 다르지만 예산·회계적 측면이나 실질적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유사한 측면이 많다는 견해도 있다. Michael Likosky, "Contracting and Regulatory Issues in the Oil and Gas and Metallic Metals Industries", *Transnational Corporations* (2009. 4), pp. 4, 13.

<sup>5</sup> Zhigou Gao, *International Petroleum Contracts; Current Trends and new Directions*, Graham&Tortman/Martinus Nijhoff(1994), pp. 11~12.

터만 지급하면 되었고, 탐사개발에 대하여 자원보유국 정부의 간섭을 받거나, 세금이나 기타 보너스 등을 지급할 의무도 없었다. 이와 같이 고전적 양허가 자원보유국 정부 입장에서는 불리하였기 때문에, 동등이익분배, 새로운 로열티 지급, 보너스의 지급, 새금 부과, 가격통제, 광구반납, 최소작업의무, 정부의 개인 등을 규정한 현대의 양허계약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대적 양허에서도 자원보유국 정부가 국제석유회사로 하여금 일정한 지역에 대한 원유·가스 탐사개발을 허용한다는 기본적인 개념에는 변화가 없는바, 국제석유회사 혹은 이들이 주축이 된 컨소시엄은 원유·가스 탐사개발에 대한 구체적 사항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이 허용된다.<sup>7</sup>

## (2) 생산물분배계약

생산물분배계약은 자원보유국이 원유·가스에 대한 소유권과 통제권을 보유하고, 국제석유회사는 탐사개발에 따른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고 나서, 탐사개발에 성공한 경우 생산물을 분배받아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이다.<sup>8</sup> 탐사개발권자는 원칙적으로 원유·가스에 대한 소유권은 없지만, 우선 생산된 원유·가스에서 자신의 비용을 회수하고 남은 원유·가스 생산물 가운데, 자원보유국 정부가 분배해 준 것에 대하여 소유권을 갖게 된다. 즉, 생산물분배계약은 자원보유국이 원유·가스에 대한 소유권과 통제권을 보유하고, 국제석유회사는 탐사개발에 따른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고 나서, 탐사개발에 성공한 경우 생산물을 분배받아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이다.<sup>9</sup> 따라서, 합작투자과 달리, 자원보유국 정부는 원유·가스의 탐사개발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생산물분배계약하에서 자원보유국 정부는 탐사개발권자에 대하여 각종 보너스를 요구하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sup>10</sup>

<sup>6</sup> 오일석, “원유·가스 탐사개발 계약에서의 계약설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2. 12), p. 62 참조.

<sup>7</sup> 오일석, “베네수엘라에서의 원유·가스 탐사개발을 위한 합작투자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제 15권 제4호(2014. 12), p. 278 참조.

<sup>8</sup> 오일석, 앞의 박사학위 논문(각주 6), p. 67 참조.

<sup>9</sup> Tade Oyewunmi, “Stabilization and Renegotiation Clauses in Production Sharing Contracts: Examining the Problems and Key Issues”, *International Energy Law Journal* 2011 ~7(2011), pp. 276, 277.

<sup>10</sup> 오일석, 앞의 박사학위 논문(각주 6), p. 72 참조.

### (3) 도급계약

도급계약<sup>11</sup>은 자원보유국 정부와 원유·가스 탐사개발을 수행하기로 계약한 국제석유회사가 개발생산된 원유·가스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못한 채,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를 받는 것이다.<sup>12</sup>

국제석유회사들이 일정 광구에 대한 탐사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보유국 정부는 그러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수료만을 지급하는 도급계약도 체결되고 있다. 생산물분배계약과 같이 도급계약에서도 국제석유회사는 원유·가스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 다만, 국제석유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수령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허 설비와 인력을 가지고 있는 국제석유회사 등은 서비스계약을 통하여 탐사개발을 지속함으로써 이들을 활용하고 고정비용 등을 상쇄함은 물론, 관련 기술과 경험을 더욱 축적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계약에 응하게 된다.<sup>13</sup>

#### 다. 탐사개발권의 승계 취득

탐사개발권의 지분을 인수하여 탐사개발에 참여하는 승계취득의 방법에는 자산거래계약과 원유·가스 탐사개발에 참여한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주식양도계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산거래계약은 대상 자산을 직접 취득하지만, 주식양도계약은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간접적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매수인은 대상회사의 채무와 책임을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위험에 노출된다. 따라서 주식양도에서 매수인은 알려지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책임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매수인은 주식양도 보다는 자산거래계약을 선호한다.<sup>14</sup>

한편 자산거래계약에 있어, 합작투자 혹은 컨소시엄의 지분 이전을 원하는 당사자는 자신의 그 지분 양도에 대한 우선매수권 행사여부를 합작투자 혹은 컨소시엄의 다른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sup>15</sup> 즉, 자산거래계약에 있어 탐사개발권

<sup>11</sup> ‘서비스 계약’이라고도 한다.

<sup>12</sup> Ernest E. Smith, “From Concession to Service Contracts”, *Tulsa Law Journal* (1992), p. 519.

<sup>13</sup> 오일석, 앞의 논문(각주 7), p. 279 참조.

<sup>14</sup> Philip R. Clark, Howard L. Boigon and Milam Randolph Pharo, “Strategic Management Risk in Oil and Gas Acquisitions”, *Rocky Mountain Mineral Law Foundation*(2008, paper 8), III.

<sup>15</sup> 오일석, 앞의 박사학위논문(각주 6), p. 109 참조.

의 거래는 다른 당사자들의 우선매수권 행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sup>16</sup> 그러나 주식양도 방식은, 이러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위 우선매수권에 대한 회피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주식양도 방식의 경우, 자원보유국의 국내법 혹은 대상 회사의 주식이 상장된 국가의 증권거래법 등에 따라 금융감독기관에 일정 사항에 관해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sup>17</sup> 그러나 자산거래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항은 요구되지 않는다.

## 2. 북한에서의 탐사개발권 취득

### 가. 북한의 원유·가스 탐사개발 현황

북한은 1968년에 러시아와 스웨덴으로부터 첨단 탐사장비를 도입하면서 서해안의 숙전(Sook-Chon)에 원유탐사원(Oil Exploration Institute)을 설립하여 서해안에 대한 원유·가스 탐사개발을 강화하였다.<sup>18</sup> 이후 북한은 1983년 내각 산하에 원유개발청(Crude Oil Exploration Bureau)을 설립하였으며, 싱가포르로부터 14,000톤급의 탐사시추선을 도입하여 남포 인근 해상에 대한 탐사작업을 진행하였다.<sup>19</sup> 북한은 1993년에 원유개발청을 원유산업부로 격상시켰으며, 1994년에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여, 유전의 발굴, 관련 산업의 장비 현대화 및 탐사의 집중을 위해 외국인 투자를 증대할 것을 결의하였다.<sup>20</sup>

북한의 육상과 해상에 대한 다수의 탐사개발 사업이 진행되었음에도 정보의 차단과 비공개로 그 지질구조 및 유전의 경제성 등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북한의 해상 광구에서의 원유·가스 매장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평가되고 있다. 한편 1993년 북한은 서해와 동해에 13개의 시험시추를 실시하였으며, 평안도 조도로부터 66킬로미터 떨어진 서해에서 350배럴의 원유를 생산하였으며, 1998년에는 남포해상에서 450배럴의 원유를 생산하였다.<sup>21</sup> 나아가 캐나다 석유회사인 Cantex는 위 조도 인근 광구에서 대한 시추를 통해볼 때 50억에

<sup>16</sup> *Ibid.*

<sup>17</sup> *Ibid.*

<sup>18</sup> Edward Yoon, *Status and Future of the North Korean Minerals Sector*, Nautilus Institute(January 6, 2011), p. 22.

<sup>19</sup> Paik Keun Wook, "North Korea And Seabed Petroleum,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pp. 1~7<available at [http://www.wilsoncenter.org/sites/default/files/Keun\\_Wook\\_Paik.pdf](http://www.wilsoncenter.org/sites/default/files/Keun_Wook_Paik.pdf)> (검색일: 2015.11.19).

<sup>20</sup> Paik Keun Wook, 위의 글, p. 4.

<sup>21</sup> Edward Yoon, 앞의 글(각주 18), p. 22.

서 400억 배럴의 원유가 매장되어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하였다.<sup>22</sup>

북한의 온천, 안주, 서한만, 평양, 동한만, 길주, 경성만 등 7개 지질 분지(Basins)에서 탐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1996년 시험 시추 및 1997년 500킬로미터에 이르는 2D 탄성과 조사와 그 분석을 통하여, 안주와 평양 분지 전체에서 상당한 원유·가스 침전물이 발견되어,<sup>23</sup> 원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나아가 위 7개 지질분지에서 22개 유정(well)에 대한 시추가 진행되었는데 대부분의 유정에서 원유·가스가 발견되었고, 하루 75배럴의 경질유가 시험생산되고 있다고 한다.<sup>24</sup>

그렇지만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투자 보장이 이행되는 신뢰성을 구축하고 있지 못하고, 지질탐사, 시추, 생산, 정유 및 운송 등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이 투입되기 곤란하며, 현지 가동되고 있는 시설들도 낙후하여 이를 재정비하고 가동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자본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sup>25</sup>

## 나. 북한 정부와 국제석유회사의 탐사개발권 계약

원유·가스 탐사개발은 원유·가스 지원에 대한 탐사, 탐사된 유정에 대한 시험 시추, 이에 기초한 해당 유정에 대한 경제성 평가, 개발·생산 등으로 이루어진다.<sup>26</sup> 자원보유국 정부는 탐사권과 개발생산권을 따로 계약하기도 하고, 개발·생산권까지 모두 계약하기도 한다.

1974년 Beach Petroleum은 북한 정부를 대리하는 조선설비와 5년의 탐사와 20년의 생산 기간으로 구성된 25년의 생산물분배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계약에는 세금이나 계약체결에 따른 보너스는 없었지만, 생산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이 규정되었으며, Beach Petroleum은 1997년 1,000킬로미터에 이르는 추가 지역에 대한 탄성과 탐사 비용을 대가로 위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른 25%의 권리를 말레

<sup>22</sup> Edward Yoon, 앞의 글(각주 18), pp. 22~23.

<sup>23</sup> HBOil JSC, "Announces Acquisition of North Korean Oil Projects"(June 17, 2013) <available at [http://www.bdsec.mn/files/HBOil\\_JSC\\_Announces\\_Acquisition\\_of\\_North\\_Korean\\_Oil\\_Projects.pdf](http://www.bdsec.mn/files/HBOil_JSC_Announces_Acquisition_of_North_Korean_Oil_Projects.pdf)> (검색일: 2015.11.19).

<sup>24</sup> James Byrne, "North Korea takes first steps towards oil exploration, the guardian"(2014. 7.1) <available at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4/jul/01/north-korea-oil-gas-exploration>> (검색일: 2015.11.19).

<sup>25</sup> *Ibid.*,

<sup>26</sup> 이와 같은 활동을 상류(upstream)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생산된 원유·가스에 대한 수송이나 운송 등과 관련된 활동을 중류(midstream), 정유 및 마케팅 등의 활동을 하류(downstream)이라고 한다.



이시아 회사에 farm-out<sup>27</sup> 계약방식으로 이전하였다.<sup>28</sup>

북한은 1987년 영국의 석유회사인 Leeward와 탐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1987년 7월 31일에 네덜란드 석유회사인 Meridian과 서한만에 대한 탐사 계약을 체결하였다.<sup>29</sup> 네덜란드 Meridian 석유회사의 호주 법인은 1990년에 북한 당국과 탐사권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Meridian이 탐사한 지진판 데이터는 런던의 프로세싱 센터에 보내졌지만, 북한 당국은 그 처리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여 데이터를 돌려받는데 실패하였다.<sup>30</sup>

한편 북한 에너지부를 대리한 국영회사인 조선설비가 1993년에 Taurus Petroleum과 생산물분배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생산물분배계약은 1백만 달러를 대금으로 5년간의 탐사기간에 최대 3년의 연장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유·가스가 생산되는 경우 최초 북한이 55%의 생산물을 갖는 것으로 하고, 생산 비율의 증가에 따라 북한 당국의 소유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조세나 보너스는 별도로 지급함이 없이, Taurus Petroleum가 북한에 분배되고 남은 생산물의 소유권을 차지하는 것으로 하였다.<sup>31</sup>

2001년 9월, 싱가포르 회사인 Sovereign Ventures Pte. Ltd(SVPL)는 북한 당국으로부터 중국과의 국경지역에서부터 두만강을 지나 블라디보스토크 남쪽에 이르는 지역에 대한 양허(concession)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양허는 지구물리학 탐사를 위한 시험기간 3년, 2년의 시험 시추 단계 및 탐사개발에 성공할 경우 20년의 개발생산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최초 5년 동안의 운영에 대하여는 법인세

<sup>27</sup> 오정환, “원유·가스 탐사개발권의 취득에 관한 법적 연구-Farmout 거래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1. 2), p. 21. Farm-out은 원유·가스 탐사개발과 관련한 자산, 권리 등의 거래에 있어 직접취득이나 간접취득이 아닌 제3의 방식이다. 왜냐하면, farm-out은 탐사개발권의 양수인인 farmee가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선행조건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양수인인 farmee는 양도인인 farmor에게 거래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farm-out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탐사 등의 급부를 이행함으로써 탐사개발권을 취득하게 된다. Farm-out 계약은 향후 farmee의 일정급부 이행을 조건으로 탐사개발권이 이전되지만, farm-out 계약 체결시점에 farmee가 대상 광구의 점유를 이전받고 이에 대한 탐사개발을 직접 수행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Farm-out 거래는 탐사개발권이라는 자산을 직접 취득한다는 점에서 광의로 자산거래계약의 일종으로도 볼 수 있으나, 거래절차나 방법에 있어 자산거래계약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3의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sup>28</sup> Alex Stewart, “Glimmers of hope seen in North Korean basins, markets”, Oil and Gas Journal(April 1, 1999), p.3 <available at <http://www.ogj.com/articles/print/volume-97/issue-1/in-this-issue/exploration/glimmers-of-hope-seen-in-north-korean-basins-markets.html>> (검색일: 2015.11.19).

<sup>29</sup> Paik Keun Wook, 위의 글(각주 19), pp. 3~4.

<sup>30</sup> Paik Keun Wook, 위의 글(각주 19), p. 4.

<sup>31</sup> Alex Stewart, 위의 글(각주 28), pp. 3~4.

가 면제된다.<sup>32</sup>

### 다. 북한 탐사개발권의 승계취득

북한 국영석유회사(KOEC)는 2012년 10월 북한의 해상에서 원유·가스 탐사개발 및 생산을 위하여 NHLB와 합작으로 KOEC International Inc.(KOEC-II)를 설립하였으며, KOEC-II의 주식은 NHLB가 20%, 북한 국영석유회사가 80%를 보유하기로 하였다.<sup>33</sup> 한편 석유제품의 정제 및 처리에 대한 전문회사로서 몽고 주식시장에 상장된 HBO는 2013년 NHLB의 주식을 100% 인수하였다. 이와 같이 HBO는 주식양도 방식의 탐사개발권 승계취득을 통하여 북한의 원유·가스 탐사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나아가 HBO는 시장 참가자들에 대하여 북한의 지하지질구조에 대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탐사개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sup>34</sup>

## III. 북한 정부의 위협과 계약법적 고려사항

### 1. 북한 정부에 의한 위협

북한 원유·가스 탐사개발 사업에 있어 지질구조와 개발 생산에 대한 어려움 못지않게 위협한 것이 북한의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상황이다.<sup>35</sup> 북한의 원유·가스 탐사개발에 참여한 국제석유회사 등의 이해관계는 북한 당국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이나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원유·가스 탐사개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정치 상황은 물론 경제, 사회적 운영체계에 대한 이해는 물론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 등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은 낙후된 기술과 부족한 자본 및 전문 인력과 정보의 부재로 인하여,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원유·가스 탐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2004년 9월에 런던에 기반을 둔 Aminex와 서해안 및 동해안 일부의 해상과 육상인 안주 분비에 대한 9년 기간의 생산물분배계약은 물론

<sup>32</sup> Paik Keun Wook, 위의 글(각주 19), p. 7.

<sup>33</sup> HBOil JSC, 위의 글(각주 23).

<sup>34</sup> James Byrne, 위의 글(각주 24).

<sup>35</sup> James Byrne, 위의 글(각주 24).

20년 동안의 탐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탐사계약에 의하면 Aminex는 자신의 탐사를 기반으로 북한에서 생산되는 모든 원유·가스에 대한 로열티를 받을 수 있으며, 시추된 유정에 대한 권리를 매수할 권한을 부여받고, 기존 탐사권에 대한 우선권도 부여받았다.<sup>36</sup>

그러나 계약체결 이후 5년이나 진행과 정지를 반복한 끝에 Aminex는 겨우 탐사 작업을 시작하고 관련 장비와 설비를 북한에 들여올 수 있었다. Aminex가 탐성과 데이터에 대한 일부 분석을 완료하였다고 하였지만, 북한에 대한 투자는 미미한 수준이다. 2010년에 Aminex는 자회사인 KOREX의 해당 권리(이해관계)의 50%를 싱가포르회사인 조선에너지에게 매각하였다.<sup>37</sup>

한편 서해에서의 원유·가스 탐사개발은 2005년 북한의 부수상(deputy premier)인 로두철(Doochul Roh)과 중국의 부수상인 쟁페이안(Zeng Paiyan) 사이에 체결된 MOU에 의하여 중지되었다.<sup>38</sup> 이 과정에서 Aminex는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었으며 북한 사업을 중지하여야 했다. 2012년 5월 Aminex는 북한의 양허 계약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minex는 북한과의 탐사계약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북한의 광구에 대한 탐사를 수행하였으므로, 생산물분배계약을 체결하여 개발·생산권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한 것이다. 비록 Aminex가 공식적으로 개발생산에 나아가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예측할 수 없는 정치적 환경에 대한 성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 회사의 2005년부터 2009년의 연차보고서에서는 북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북한에서의 사업 진행의 곤란함을 인정하고 있다.<sup>39</sup>

## 2. 계약법적 고려사항

북한과 같이 정치적 불안정성이 크고,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성을 담보하기 곤란

<sup>36</sup> RIGZONE, “Aminex Signs Production Sharing Agreement in North Korea”(2005. 8. 4) <[http://www.rigzone.com/news/oil\\_gas/a/24264/Aminex\\_Signs\\_Production\\_Sharing\\_Agreement\\_in\\_North\\_Korea#sthash.hrqE1cJZ.dpuf](http://www.rigzone.com/news/oil_gas/a/24264/Aminex_Signs_Production_Sharing_Agreement_in_North_Korea#sthash.hrqE1cJZ.dpuf)>[http://www.rigzone.com/news/oil\\_gas/a/24264/Aminex\\_Signs\\_Production\\_Sharing\\_Agreement\\_in\\_North\\_Korea](http://www.rigzone.com/news/oil_gas/a/24264/Aminex_Signs_Production_Sharing_Agreement_in_North_Korea)> (검색일: 2015.11.19).

<sup>37</sup> Shore Capital Aminex, *Equities Research* (November 15, 2010), p. 10.

<sup>38</sup> Leo Byrne, “North Korea takes first steps towards oil exploration, the guardian”(July 1, 2014) <available at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4/jul/01/north-korea-oil-gas-exploration>> (검색일: 2015.11.19).

<sup>39</sup> *Ibid.*.

하여 투자자보호에 대한 기대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 국제석유회사들은 이러한 국가와 체결한 탐사개발권 계약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법적 장치를 규정하여야 한다. 원유·가스 탐사개발계약에 있어 정치적 위험이 심각하고 투자에 대한 보호체계가 미흡한 자원보유국 정부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제석유회사들은 보통 안정화 조항, 재협상 및 수용조항, 준거법 조항, 중재 및 주권면제 포기 조항 등을 규정한다.

### 가. 안정화 조항

안정화 조항은 원래 자원보유국 정부의 법률을 동결시켜 자원보유국 정부가 탐사개발권 계약에서 구체화된 권리 등을 변경, 소멸, 박탈하는 입법이나 정책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대의 안정화 조항은 “만일 자원보유국 정부가 원유·가스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국제석유회사가 위 계약 체결 당시와 동일한 금전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상에 의하여 원유·가스 계약의 내용이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sup>40</sup>

결국 안정화 조항은 자원보유국 정부가 국제 투자자와의 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및 법규를 변경할 수 있는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권리와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기능한다.<sup>41</sup> 따라서 국제석유회사 등은, 입법이나 정책의 변경, 원유·가스 사업에 대하여 중대한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 있어서도 동일한 경제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안정화 조항을 규정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북한 당국이 탐사개발권의 조건과 내용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국제석유회사 등은 계약에 반영된 안정화 조항을 근거로 일방적 계약 변경에 대하여 대응하여,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여야 한다.

### 나. 재협상 및 변경 조항

원유·가스 탐사개발은 장기간의 고위험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 상황은 물론 자연적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이와 같이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재협상 및 변경 조항(Renegotiation and Adaption

<sup>40</sup> Talal A.Q. Al-Emadi, “Stabilization Clauses in International Joint Venture Agreements”, *International Energy Law Review* (2010), p. 57.

<sup>41</sup> 오일석, 앞의 박사학위 논문(각주 6), p. 89 참조.

Clauses)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재협상 및 변경 조항에 의하여 당사자들은 새로운 상황에 적합하도록 계약을 변경함으로써 탐사개발권 관련 계약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sup>42</sup> 그러나 재협상 및 변경 조항은 정치적 혹은 법률적 문제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시켜야 한다. 재협상 조항을 이들 문제 이외의 가격 변동 등으로 확대하게 되면, 자원보유국 정부는 재협상 조항을 근거로 로열티, 생산물분배 비율, 세금 등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43</sup> 따라서 재협상 조항은 재협상을 야기하는 상황변화, 사정변경의 계약에 관한 영향, 재협상의 목적, 재협상의 절차, 재협상 과정이 실패한 경우의 해결책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sup>44</sup>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국제석유회사 등은 재협상 및 변경 조항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규정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국제사회에서 신뢰성을 상실한 북한당국은 재협상 조항을 통하여 로열티의 증대, 최소작업의무에 대한 기간 단축, 세금 부과 등 국제석유회사에 오히려 불리한 내용을 재협상으로 요구할 수도 있는바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 다. 준거법 조항

원유·가스 탐사개발권 계약에 있어 준거법 문제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분쟁 뿐만 아니라, 이 계약의 해석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탐사개발권 계약과 관련된 준거법 조항(Applicable Law Clause)은 엄격히 말하자면 계약의 해석에 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계약과 관련한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Aminex와의 계약에서 준거법으로 스위스법이 채택되었는데,<sup>45</sup> 이는 원유·가스 개발생산을 위해 외국인 투자가 절실한 북한 당국이 양보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제석유회사 등은 이러한 북한 당국의 태도를 이용하여 보다

<sup>42</sup> Bede Nwete, “To what extent can Renegotiation Clauses Achieve Stability and Flexibility in Petroleum Development Contracts?”, *International Energy Law and Taxation Review* (2006), p. 56.

<sup>43</sup> Piero Bernardini, “The Renegotiation of Investment Contracts”, *Foreign Investment Law Journal* (1998), p. 416.

<sup>44</sup> Piero Bernardini, “Stabilization and Adaptation in Oil and Gas Investments”, *Journal of World Energy Law & Business* (2008), pp. 103~110.

<sup>45</sup> RIGZONE, 앞의 글(각주 36).

유리한 준거법 조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 라. 중재 및 주권면제포기 조항

국제석유회사들은 탐사개발권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국제상사 중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sup>46</sup> 원유·가스 탐사개발에 있어 당사자들은 중재조항과 관련하여, 중재 이전의 분쟁의 조정, 중재자의 임명, 주권면제<sup>47</sup>의 포기 등을 규정한다.<sup>48</sup> 일반적으로 자원보유국 정부와 국제석유회사의 중재합의는 자원보유국 정부가 주권면제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주권면제를 원용하여 중재절차에의 회부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중재판정의 집행에 대해서도 주권면제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sup>49</sup> 따라서 중재판정의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주권면제 포기<sup>50</sup> 조항을 반드시 설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국제석유회사 등은 북한과 양자투자협정을 체결한 국가를 파악하고 이들 국가에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 북한 당국과 탐사개발권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양자투자협정을 통해 국제 중재 및 주권면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sup>46</sup> R. Doak Bishop, Sashe D. Dimitroff and Craig S. Miles, "Strategic Options Available When Catastrophe Strikes the Major International Energy Project", *Texas International Law Journal* (2001), p. 653.

<sup>47</sup> 유형성, "국가면제의 제한에 관한 국제적 동향", 『법학연구』, 한국법학회(2009.5), p. 444. 국제관습법상 국가는 원칙적으로 다른 국가의 주권에 복종하지 아니하므로 국가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 국가면제(state immunity) 또는 관할권면제(jurisdictional immunity)라 한다. 오승진, "국제법상 국가면제: 국제인권법의 관점에서", 『안암법학』, 제28호 (2009. 1), p. 462. 주권면제 이론은 국제법상 모든 국가는 평등하므로 어느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과 국가간의 우의를 유지하고 국가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게 한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고 한다.

<sup>48</sup> 오일석, 앞의 박사논문(각주 6), p. 94 참조.

<sup>49</sup> 최승환, "해외에너지자원개발협정의 법적 쟁점과 분쟁사례", 『국제거래법연구』, 제17권 제2호 (2008), p. 350.

<sup>50</sup> R. Doak Bishop, James Crawford & W. Michael Reisman, *Foreign Investment Disputes: Cases, Materials and Commentary* (Kluwer Law International, 2005), p. 308. 주권면제의 포기(Waiver of Sovereign Immunity)는 "당사자들은 이 중재조항에 의하여 판단 또는 결정된 사항에 대한 유효성과 강제력에 관하여 주권면제의 포기를 명확히 하며, 만일 일방 당사자가 중재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 중재조항은 해당 법률에 따라 관할권을 갖는 법원에 의하여 소송당사자에 대해 강제력을 갖는다"라고 설계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외국 법원이 특정 국가에 대하여 주권면제 원칙을 근거로 다른 국가의 법원에 제기된 중재 판단의 집행을 거절하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 3. 소결

국제석유회사 등이 북한의 정부 위협에 대응하여 안정화 조항, 재협상 및 변경 조항, 준거법 조항, 중재 및 주권면제포기 조항 등을 탐사개발권 계약에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이 탐사개발권에 대한 국유화, 수용, 무단 변경 등을 실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석유회사 등은 탐사개발권 계약의 위 조항들을 근거로 국제사법당국에 북한을 제소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사법당국이 위 계약조항들을 근거로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석유회사에 대한 배상을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북한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국제석유회사는 북한의 해외자산에 대한 압류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국제사법당국의 결정을 무시하는 경우 북한에 투입된 해외자본이 이탈할 수 있고 이는 북한의 경제를 더욱 퇴보시킬 것이므로, 이러한 계약규정에 기초한 국제사법당국의 결정은 실질적인 구속력을 담보할 수 있다.

## IV. 통일 대비 북한 원유·가스 탐사개발계약에 관한 분석

### 1. 북한의 계약에 대한 국가 승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당국은 국제석유회사와 원유·가스 탐사개발을 위한 양허 및 생산물분배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남북한은 특수관계에 놓여있지만 ‘통일’이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만일 남북한이 통일되는 경우 통일한국은 북한이 체결한 양허나 생산물분배계약에 구속되는지와 관련된 국가승계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국가승계에 있어 양허나 생산물분배계약과 같은 기득권보호의 문제는 이론적 대립이 있었으며 국제 판례나 관행에서도 문제되고 있다. 전통적 국제법은 선행국에 의하여 부여된 양허권은 기득권 존중의 원칙에 따라 승계국에 의하여 존중되어야 하고, 상설국제사법법원(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의 판례도 선행국에 의하여 부여된 기득권이 후계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지만, 주권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사태에 있어서 승계국의 공익 및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고려할 필요 때문에 승계국은 양허권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한다.<sup>51</sup> 결국 양

<sup>51</sup> 법무법인 태평양, 『통일시 북한의 대외관계 승계문제에 대한 연구』,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보고서(2011.9), p. 112 참조.

허계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국가 관행을 볼 때, 국제사회의 이익과 승계국의 이익을 형량하여 관련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해결하고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계국인 통일 한국은 선행국인 북한이 국제석유회사 등과 체결한 원유·가스 탐사개발에 관한 양허계약을 승계하게 될 것이다.<sup>52</sup> 따라서 원유·가스 탐사개발 사업과 관련한 투자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제3국의 이해를 고려하여 통일 한국은 북한의 채무를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일 한국은 해당 양허계약의 당사자와 협의를 하여 북한 지역 주민의 최저 생존권 보장 및 북한 지역의 경제재건과 같은 합목적적 요청을 감안하여 북한 지역에 성립되어 있는 외국의 북한 원유·가스 탐사개발 관련 권리에 대해 다시 협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sup>53</sup>

## 2. 안정화 조항 및 재협상 조항의 활용

원유·가스 탐사개발과 같은 대규모 거래 계약에 있어, 근본적이고 예상하지 못한 불측의 사정변경 및 이행의 실패로 인하여 당사자들이 의도하였던 목적달성에 대한 심각한 장애상황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에게 재협상 관련 권리와 의무를 제공하여야 한다.<sup>54</sup> 따라서 원유·가스 탐사개발과 관련한 양허나 생산물분배계약에서 재협상이 필요한 사건, 재협상의 효과와 목적을 탐사개발권 계약 내용에 상세하게 정의하기도 한다.<sup>55</sup> 그러나 이와 같은 사항을 계약 내용에 구체적으로 정의해 버리면, 당사자들이 효과적인 재협상 및 변경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황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 재협상에 대한 실질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sup>56</sup>

재협상 조항을 통하여 당사자는 일방적이고 비효율적이 되어버린 계약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즉, 재협상과 변경 조항에 의하여 당사자들은 새로운 상황에 적합하도록 계약을 변경함으로써 탐사개발권 관련 계약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sup>52</sup> 정민정, “북한의 광물자원개발에 관한 양허계약의 통일 후 처리 문제와 대응과제”, 『NARS 정책보고서』, 제36호(2015.5.4), 국회입법조사처, pp. 65, 67 참조

<sup>53</sup> 정민정, 앞의 보고서, p. 66 참조.

<sup>54</sup> Thomas W. Wälde & Abba Kolo, “Renegotiation and Contract Adaptation in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Projects: Applicable Legal Principles & Industry Practices”, *Oil Gas Energy Law* (2003), pp. 7~8.

<sup>55</sup> *Ibid.*,

<sup>56</sup> Thomas W. Wälde, “Renegotiating acquired Rights in the Oil and Gas Industries: Industry and Political Cycles meet the Rule of Law”, *Journal of World Energy Law & Business* (2008), p. 550.



따라서 북한이 국제석유회사와 체결한 양허나 생산물분배계약에 재협상 조항이 있다면 통일 한국은 이를 적극 주장하여야 한다. 한반도 통일 상황은 근본적이고 예상하지 못한 사정의 변경에 해당하는 바, 당사자들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러한 상황에 적합하게 자신의 권리관계에 대해 재협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일 한국은 국가변경 또는 승계가 탐사개발 계약과 관련한 재협상 및 변경 조항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주장하여, 로열티, 보너스, 생산물 분배 조건 등에 있어 통일한국에 보다 유리하게 탐사개발계약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아가 북한의 탐사개발계약을 승계한 통일한국은 안정화 조항을 근거로 국제석유회사 등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 다음 국제석유회사의 탐사개발권을 회수 또는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한반도 통일과 같은 정치적 문제와 관련하여 정당한 보상에 기초한 탐사개발권의 수용이나 재협상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계약적 장치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존 탐사개발권자들이 탐사개발권 수용과 관련한 정당한 보상에 대해 의문과 분쟁을 제기하거나, 재협상 조항이 일방적인 계약 변경이 되어 국제석유회사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통일 한국은 국제사회의 신뢰성을 상실함은 물론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분쟁에 휘말리게 되어 원유·가스 탐사개발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통일 한국은 북한이 체결한 양허나 생산물분배계약에 재협상 조항이 있는 경우 국제사회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편으로는 북한의 원유·가스 탐사개발 사업에 진출한 국제석유회사의 투자보장을,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 한국을 위한 정치적 혹은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재협상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재협상 조항에 한반도의 통일이 재협상이 필요한 상황변화로 반영되도록 하고, 한반도의 통일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재협상 관련 협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재협상 조항에 따른 계약 변경의 경우에도 통일 한국의 경우 탐사개발권자의 이익이 전혀 침해되지 않음을 남한 당국이 지속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국제석유회사 등이 북한 당국과 원유·가스 탐사개발을 위한 양허나 생산물분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러한 재협상 조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 3. 공동운영계약을 통한 운영 통제

북한이 기존에 국제석유회사 등과 체결한 양허나 생산물분배계약 등 탐사개발

권 계약이 국가승계에 따라 통일한국으로 승계되는 경우, 기존 탐사개발권에 따라 해당 광구의 탐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SVPL 등과 같은 기존 운영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아 계속 운영자로서 탐사개발을 수행할 것이다. 만일 북한의 국영석유회사(KOEC)가 기존 운영자가 운영하고 있는 원유·가스 탐사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통일 한국의 원유·가스 탐사개발 관련 정부 조직은 최소작업 의무 및 광구반납규정 등 기존 탐사개발권 계약에 기초하여 SVPL 등 기존 운영자들을 통제하고 조속한 탐사개발이 진행되도록 압박하여야 한다.

한편 북한과 국제석유회사의 탐사개발권 계약에 따라, 기존 운영자가 중심이 된 원유·가스 탐사개발 사업에 북한의 국영석유회사가 비운영자로 참여한 경우에는 통일 한국의 국영석유회사가 이 회사의 권리를 인수하여 비운영자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통일한국의 국영석유회사는 비운영자로서 공동운영계약(Joint Operating Agreement: JOA)의 규정을 통하여 SVPL 등 운영자를 통제하여야 한다.

원유·가스 등의 자원에 대한 탐사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 반드시 체결되는 주요 계약 중 하나가 공동운영계약이다.<sup>57</sup> 공동운영계약은 원유·가스 탐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들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를 정하는 계약으로서,<sup>58</sup>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는 공동운영계약에서 규정한 각 당사자의 참여지분권(Participating Interest: PI)에 따라 배분되는 것이 보통이며, 통상 20년 내지 30년의 탐사개발권 기간 동안 탐사, 매장량 평가, 개발, 생산 등이 규정된다.<sup>59</sup>

비운영자인 통일 한국의 국영석유회사나 비운영자로서 북한의 원유·가스 탐사개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제석유회사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확보하는 방안을 공동운영계약에 설계하여야 한다. 우선, 이들 비운영자는 자신의 직원을 운영 현장에 직접 파견하여 일상적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탐사개발과 관련하여 기존 운영자가 수집, 생산하여 관리 중인 탐사개발 관련 정보에 대하여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중요한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운영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동자산의 유지, 증가에 일조하여야 한다. 기존 운영자에 대한 행위책임의 원칙을 강

<sup>57</sup> A. Timothy Martin, "Model Contracts: A Survey of the Global Petroleum Industry," *Journal of Energy & Natural Resources* (2004), p. 291.

<sup>58</sup> Eduardo G. Pereira, *Joint Operating Agreements: Risk Control for the Non-Operator* (Globe Law and Business, 2013), p. 13.

<sup>59</sup> Charez Golvala, *Upstream Joint Ventures-Bidding and Operating Agreements, Oil and Gas: A Practical Handbook* (Globe Law and Business, 2009), p. 45.

화하여 직원들의 고의,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배상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운영 사업의 위험을 적정히 보장할 수 있는 정도의 보험에 가입하여, 운영사업의 안정적인 경제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기존 운영자로서 하여금 관련 국내의 법령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범 및 업계 관행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순 다수결, 초과 다수결, 조건부 다수결 등 의결 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아가 비운영자인 통일 한국의 국영석유회사는 탐사개발 사업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자를 선정할 때, 승인권, 추천권 등을 행사하여 적극적인 관여하여야 한다. 아울러 연간 예산안의 승인뿐만 아니라 예산의 지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승인권을 행사하여 운영자로 하여금 자금 지출의 합리성,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sup>60</sup>

#### 4. 북한과 중국 및 러시아와의 공동개발 및 광구통합계약

원유·가스가 존재하는 지질구조는 서로 광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며, 원유·가스는 동일한 지질구조 내에서 유동적으로 흘러 다니기 때문에, 유전 지대가 두 개 이상의 광구에 걸쳐 있는 경우, 한 쪽 광구의 소유자가 그 지하에 존재하는 원유·가스를 개발하여 생산하면, 인접 광구 소유자의 지하에 있는 원유·가스까지도 생산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인접 광구의 소유자들은 먼저 개발·생산하여 원유·가스를 차지하고자 할 것이고, 이는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따라서 인접광구의 소유자들은 광구통합계약(Unitization Agreement)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광구통합은 하나의 매장지에 다수의 개발구역이 존재하며 해당 개발구역마다 별개의 개발권이 부여되어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모든 개발권자들이 각자의 개발권역이나 개발계약을 초월하여 하나의 개발단위를 형성하고 단일한 운영권자에 의해 생산되도록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sup>61</sup>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황해에서 발견된 원유·가스 유전은 중국과 북한으로 이어진 지질구조에 위치하고 있고, 동해의 경우 지질학적으로 사할린과 이어져 있는바, 해상 원유·가스를 개발생산하게 되는 경우 그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sup>60</sup> 오정환, “해외자원개발의 공동운영계약상 비운영자의 보호 방안”, 『국제거래법연구』, 제23권 제1호(2014. 6), pp. 281~282, 289 참조.

<sup>61</sup> 정준환, 류권홍, 『영유권 미확정지역에서의 자원개발 분쟁사례 연구』, 에너지 경제연구원(2011), p. 91 참조.

수도 있다. 즉, 북한과 중국 혹은 북한과 러시아의 접속수역에서 원유가 발견된 경우, 해당 유전과 연결된 각국의 유전에서 보다 많이 생산하는 국가가 원유·가스의 소유권을 확보하게 된다. 그런데 북한의 원유·가스 개발생산 상황을 고려할 때, 이 경우 러시아나 중국의 생산 능력을 따라 잡을 수 없어 해당 유전의 원유·가스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상실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만일 남북한이 통일 되는 경우, 통일 한국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발생산을 더욱 가속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발생산을 가속화하는 것은 탐사개발권 관련 계약을 변경하여야 하는바,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중국이나 러시아와 북한으로 하여금 해당 탐사개발권자들에게 광구통합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이들 국가들과의 접경 해상에서 생산되는 통일 한국의 원유·가스에 대한 소유권을 일정부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북한이 원유·가스를 개발생산하고 있는 해상에 대하여 중국이나 러시아 등과 영유권 분쟁이 있을 수 있는데, 남북한이 통일된 경우, 통일 한국은 이들 국가들과 영유권 획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해당지역에 대하여 원유·가스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공동개발협정(Joint Development Agreement)이<sup>62</sup> 체결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공동개발이란 둘 이상의 국가가 일정 지역에 영유권을 다투고 있으나, 관련 국가들이 영유권 획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해당 지역에서의 자원개발을 공동으로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sup>63</sup> 공동개발을 통하여 통일 한국은 분쟁지역에 존재하는 자원에 대한 신속하게 개발함으로써, 국제석유회사의 참여를 유인하게 되고, 원유·가스 탐사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회수함은 물론, 원유·가스를 일정 부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V. 결론

미국의 ‘뉴 실크로드 이니셔티브’,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대비하여, 우리 정부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주창하면서, 유라시아 역내 국가 간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에 대한 개방을 유도하고 이로써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켜 통일의 초석을 닦는다는 구상을 공식화하였다. 북한개발은 북한경제의 악화로

<sup>62</sup>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류권홍, “영유권 분쟁지역에서의 자원개발-광구통합을 중심으로”, 『석유』 (2012. 11), p. 4 이하 참조.

<sup>63</sup> *Ibid.*, p. 4 참조.

인한 북한 주민의 생활고 및 북한 체제의 불안정 해소를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남한의 저성장 국면을 돌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한반도 및 동북아 협력을 추진하는 중요한 전략적 통로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sup>64</sup>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에는 엄청난 양의 원유·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북한의 원유·가스 탐사개발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은 북한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 되는 동시에 통일 한국의 경제력 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북한도 낙후된 경제상황을 돌파하기 위하여 원유·가스 탐사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자본과 기술력의 열세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이러한 열세를 만회하기 위하여, 국제석유회사와 양허계약이나 생산물분배계약 등을 체결하여 원유·가스 탐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불안정성과 신뢰성 있는 정책추진의 결여 및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북한에서의 원유·가스 탐사개발에 있어 뚜렷한 성공을 거둔 국제석유회사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북한 당국의 위협에 대비하여 북한에서 탐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제석유회사나 우리 기업들은 안정화 조항, 재협상 및 변경 조항, 준거법 조항, 중재 및 주권면제포기 조항을 설계하여 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북한 당국이 국제석유회사와 기존에 체결한 탐사개발계약은 통일이 완성된 경우 통일 한국에 승계될 것이다. 이 경우 통일 한국의 입장에서는 안정화 조항을 근거로 국제석유회사 등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 다음 국제석유회사의 탐사개발권을 회수 또는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국가변경 또는 승계가 탐사개발 계약과 관련한 재협상 및 변경 조항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주장하여, 로열티, 보너스, 생산물 분배 조건 등에 있어 통일한국에 보다 유리하게 탐사개발계약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책결정에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존 탐사개발권자들이 탐사개발권 수용과 관련한 정당한 보상에 대해 의문과 분쟁을 제기하거나, 재협상 조항이 일방적인 계약 변경이 되어 국제석유회사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통일 한국은 국제사회의 신뢰성을 상실함은 물론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분쟁에 휘말리게 되어 원유·가스 탐사개발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협상 조항에 따라 탐사개발권 계약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탐사개발권자의 이익은 침해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필요

<sup>64</sup> 한국수출입은행 북한개발연구센터, 『북한개발과 국제협력』, 도서출판 오름(2014.11), pp. 272~273 참조.

가 있다.

북한과 국제석유회사의 탐사개발권 계약에 따라, 기존 운영자가 중심이 된 원유·가스 탐사개발 사업에 북한의 국영석유회사가 비운영자로 참여한 경우에는 통일한국의 국영석유회사가 이 회사의 권리를 인수하여 비운영자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통일한국의 국영석유회사는 비운영자로서 공동운영계약의 규정을 통하여 운영자를 통제하여야 한다.

통일 한국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영토 분쟁 지역 혹은 중국과 러시아 등과 해양 경계획정에 관한 문제가 있는 해상에서 원유·가스 탐사개발을 수행하게 될 경우, 공동개발을 통하여 분쟁지역에 존재하는 자원에 대한 신속하게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중국 또는 러시아와 인접한 해상에서 이들 국가의 영해와 이어진 유전이 발견된 경우, 해당 탐사개발권자들에게 광구통합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이들 국가들과의 인접한 해상에서 생산되는 통일 한국의 원유·가스에 대한 소유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앞에서 북한의 정부 위협에 대한 계약법적 대응방법과 통일 이후에 북한이 기존에 체결한 원유·가스 탐사개발권 계약의 처리 등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이와 같은 작업은, 북한의 원유·가스 탐사개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도움을 제공함은 물론 국제석유회사들이 탐사개발권을 통하여 북한의 원유·가스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일정 부분 제어하는 방법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원유·가스 등의 수급을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의 경우,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북한의 원유·가스 탐사개발과 관련한 계약에 대한 보다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 접수: 10월 19일 ■ 심사: 10월 20일 ■ 채택: 12월 4일

## 참고문헌

### 1. 단행본

- 법무법인 태평양. 『통일시 북한의 대외관계 승계문제에 대한 연구』.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2011.
- 정민정. “북한의 광물자원개발에 관한 양허계약의 통일 후 처리 문제와 대응과제.” 『NARS 정책보고서』. 제36호, 국회입법조사처, 2015.
- 정준환·류권홍. 『영유권 미확정지역에서의 자원개발 분쟁사례 연구』. 에너지 경제연구원, 2011.
- Bishop, R. Doak. James Crawford & W. Michael Reisman, *Foreign Investment Disputes: Cases, Materials and Commentary*(Kluwer Law International, 2005)
- Golvala, Charez. *Upstream Joint Ventures-Bidding and Operating Agreements, Oil and Gas: A Practical Handbook*(Globe Law and Business, 2009)
- Pereira, Eduardo G., *Joint Operating Agreements: Risk Control for the Non-Operator* (Globe Law and Business, 2013)

### 2. 논문

- 류권홍. “영유권 분쟁지역에서의 자원개발-광구통합을 중심으로.” 『석유』. 2012.
- 신종호.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한반도에 대한 함의.” Online Series(Co 15-20), 통일연구원, 2015.
- 오승진. “국제법상 국가면제: 국제인권법의 관점에서.” 『안암법학』. 제28호, 2009.
- 오일석. “베네수엘라에서의 원유·가스 탐사개발을 위한 합작투자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제15권 제4호, 2014.
- \_\_\_\_\_. “원유·가스 탐사개발 계약에서의 계약설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오정환. “원유·가스 탐사개발권의 취득에 관한 법적 연구-Farmout 거래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_\_\_\_\_. “해외자원개발의 공동운영계약상 비운영자의 보호 방안.” 『국제거래법연구』. 제23권 제1호, 2014.
- 유형성. “국가면제의 제한에 관한 국제적 동향.” 『법학연구』. 한국법학회, 2009.
- 최승환. “해외에너지자원개발협정의 법적 쟁점과 분쟁사례.” 『국제거래법연구』. 제17권 제2호, 2008.
- Al-Emadi, Talal A.Q. “Stabilization Clauses in International Joint Venture Agreements.” *International Energy Law Review*, 2010.
- Bernardini, Piero. “The Renegotiation of Investment Contracts.” *Foreign Investment Law Journal*, 1998.

- \_\_\_\_\_. “Stabilization and Adaptation in Oil and Gas Investments.” *Journal of World Energy Law & Business*, 2008.
- Bishop, R. Doak, Sashe D. Dimitroff and Craig S. Miles, “Strategic Options Available When Catastrophe Strikes the Major International Energy Project.” *Texas International Law Journal*, 2001.
- Black, Alexander J., “Comparative Licensing Aspects of Canadian & United Kingdom Petroleum Law.” *Texas International Law Journal*, 1986.
- Black, Alexander J. & Hew R. Dundas. “Joint Operating Agreements: An International Comparasion from Petroleum Law.” *Journal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al Law*, 1992/1993.
- Brinsmead, Simon, “Oil Concession Contracts and the Problem of Hold-up” <available at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1002755](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1002755)> (검색일: 2015. 11.19).
- Byrne, James, “North Korea takes first steps towards oil exploration, the guardian” (2014. 7. 1, <available at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4/jul/01/north-korea-oil-gas-exploration>> (검색일: 2015.11.19).
- Byrne, Leo, North Korea takes first steps towards oil exploration, the guardian(July 1, 2014) <available at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4/jul/01/north-korea-oil-gas-exploration>> (검색일: 2015.11.19)
- Center for Energy Economics. “Terms for Upstream Projects - An Overview”(CEE Publications, 1991-2007), <[www.beg.utexas.edu/energyecon/new-era/case\\_studies/Fiscal\\_Terms\\_for\\_Upstream\\_Projects.pdf](http://www.beg.utexas.edu/energyecon/new-era/case_studies/Fiscal_Terms_for_Upstream_Projects.pdf)> (검색일: 2015.11.19)
- Clark, Philip R., Howard L. Boigon and Milam Randolph Pharo, “Strategic Management Risk in Oil and Gas Acquisitions.” *Rocky Mountain Mineral Law Foundation*, 2008.
- Keun Wook, Paik. “North Korea And Seabed Petroleum,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available at [http://www.wilsoncenter.org/sites/default/files/Keun\\_Wook\\_Paik.pdf](http://www.wilsoncenter.org/sites/default/files/Keun_Wook_Paik.pdf)> (검색일: 2015.11.19).
- Likosky, Michael. “Contracting and Regulatory Issues in the Oil and Gas and Metallic Metals Industries.” *Transnational Corporations*, 2009.
- Martin, A. Timothy. “Model Contracts: A Survey of the Global Petroleum Industry”, *Journal of Energy & Natural Resources*, 2004.
- Nwete, Bede. “To what extent can Renegotiation Clauses Achieve Stability and Flexibility in Petroleum Development Contracts?”, *International Energy Law and Taxation Review*, 2006.
- Patterson, Rob. “Acquisitions and Disposals on the U.K. Continental Shelf: an Introduction.” *International Energy Law and Taxation Review*, 2001.
- Pongsiri, Nutavoot. “Partnerships in oil and gas production-sharing contract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Sector Management*(2004),<available at <http://www.emeraldinsight.com/journals.htm?articleid=868037&show=html>> (검



색일: 2015.11.19).

- Stewart, Alex. "Glimmers of hope seen in North Korean basins, markets." *Oil and Gas Journal*(April 1, 1999) <<http://www.ogj.com/index.html>> (검색일: 2015.11.19).
- Wälde, Thomas W. & Abba Kolo. "Renegotiation and Contract Adaptation in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Projects: Applicable Legal Principles & Industry Practices." *Oil Gas Energy Law*, 2003.
- Wälde, Thomas W. & George Ndi. "Stabilizing International Investment Commitments: International Law versus Contract Interpretation." *Texas International Law Journal*, 1996.
- Wälde, Thomas W. "Renegotiating acquired Rights in the Oil and Gas Industries: Industry and Political Cycles meet the Rule of Law." *Journal of World Energy Law & Business*, 2008.
- Yoon. Edward Status and Future of the North Korean Minerals Sector, *Nautilus Institute*, January 6, 2011.

### 3. 기타자료

- HBOil JSC, "Announces Acquisition of North Korean Oil Projects" (June 17, 2013) <available at [http://www.bdsec.mn/files/HBOil\\_JSC\\_Announces\\_Acquisition\\_of\\_North\\_Korean\\_Oil\\_Projects.pdf](http://www.bdsec.mn/files/HBOil_JSC_Announces_Acquisition_of_North_Korean_Oil_Projects.pdf)> (검색일: 2015.11.19).
- RIGZONE, Aminex Signs Production Sharing Agreement in North Korea(2005. 8. 4) <available at [http://www.rigzone.com/news/oil\\_gas/a/24264/Aminex\\_Signs\\_Production\\_Sharing\\_Agreement\\_in\\_North\\_Korea](http://www.rigzone.com/news/oil_gas/a/24264/Aminex_Signs_Production_Sharing_Agreement_in_North_Korea#sthash.hrqE1cJZ.dpufhttp://www.rigzone.com/news/oil_gas/a/24264/Aminex_Signs_Production_Sharing_Agreement_in_North_Korea)> (검색일: 2015.11.19)

## **Law and Policy Review on the Oil and Gas E&P Contracts concluded by North Korean government to prepare for Korean Reunification**

*Il- Seok Oh and Sue-Jin Yoon*

It is assumed that a great amount of oil and gas are reserved in North Korea territory, especially under 7 basins areas. In the era of ‘resources wars’, South Korea, as a non oil-producing country, needs to pay attention to it. For Korean Oil companies, participating in oil and gas exploration and production(E&P) project of North Korea can be a good starting point of NK resource development which also contributes to strengthen the economic power of Unified-Korea. There are two ways of exploiting NK’s resources; signing a contract with NK’s government or taking over the existing contract. At present, South Korea has poor experienced in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projects due to the lack of capitals, high-technology, skilled experts which ends up with a joint venture or consortium. In line with this, the second option, taking over the existing contract, will be a realistic option.

However, NK resource development project has ran into a series of risks because of the political instability and a lack of trustfulness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From now on, International Oil companies and Korean Oil companies which want to participate NK resource development project should prepare for it bearing in mind those governmental risks. This paper suggested designing stabilization clause, renegotiation and adaption clause, applicable law clause, arbitration clause and waive of sovereign immunity clause as a safeguard and inserting those clauses in a contract.

On the other side, unification is another variable. Considering South and North Korea’s “temporary special relationship”,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existing contract in the light of “state succession”. Therefore, in a significant change situation, the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it is necessary to focus on how to deal with the existing contract between NK and International Oil companies. Although there are somewhat differences in composing specific grounds or constructing theories, many commentators are moving towards the idea that admits reunified Korea’s “state succession” including the existing contract concluded by NK and International Oil Companies before the reunification. Based on this viewpoint, the Reunified Korea will be able to change the existing contract to our advantages by making use of the stabilization clause, renegotiation clause. In addition, the Reunified Korea Oil companies should control the existing operator E&P project as a non-operator through Joint Operating Agreement provision provided that it does not make any loss or damage against existing

contract parties, international oil companies.

Meanwhile, when the oil and gas E&P projects performed in the off-shores adjacent with China or Russia territory, the Reunified Korea should encourage for stake holders to take Unitization agreement for a speedy development and production. When the projects developed in the conflict areas, the Reunified Korea shall take Joint Development Agreement for continuous and steady progress.

**Key Words:** State Succession, Stabilization Clause, Renegotiation and Adaption Clause, Joint Operating Agreement, Joint Development Agreement, Unitization Agreement

